

의안번호	제 191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 (제 341 회)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5년 6월 23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91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6월 23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-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및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권한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임권한 환원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: 3건

- 위임(도지사→소방서장) ⇒ 권한 환원(도지사)
 - ※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개정시행('15.7.1.)
 - ▷ 소방시설업 등록
 - ▷ 소방시설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
 - ▷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

- 근거법령 이관·위임권한 환원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: 3건

-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⇒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
- 위임(도지사→소방서장) ⇒ 권한 환원(도지사)
 - ※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및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시행('15.7.1.)
 - ▷ 방염처리업 등록
 - ▷ 방염처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
 - ▷ 방염처리업자의 지위승계

3. 의안전문 : 붙 임

4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(제2조3항 관련)

분야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대응구조 구급과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, 변경허가 및 용도폐지 나.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 및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 시험 다. 위험물제조소등의 승계신고의 수리 라. 예방규정의 인가, 변경인가, 변경명령 마.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취소, 사용 정지권 ·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나. 과징금 처분 다. 등록취소 청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, 제11조 같은법 제8조제1항, 제9조제1항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제12조
	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방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나. 과징금 처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32조
	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방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나. 과징금 처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같은법 제10조
	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등록 나.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.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라.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마. 과징금 처분 바. 등록취소 청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44조제2호
	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등록 나.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다.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같은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제16조제5항

관련법령 발췌

공통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3조(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·인가·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,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(이하 "행정권한"이라 한다)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, 다른 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.
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,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.
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,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.

제8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)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,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.

대응구조구급과

□ 소방시설공사업법 [시행 2015.7.1.] [법률 제12938호, 2014.12.30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소방시설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.

가. 소방시설설계업: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, 설계도면, 설계 설명서,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(이하 "설계도서"라 한다)를 작성(이하 "설계"라 한다)하는 영업

나. 소방시설공사업: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, 증설, 개설, 이전 및 정비(이하 "시공"이라 한다)하는 영업

다. 소방공사감리업: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, 품질·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(이하 "감리"라 한다) 영업

라. 방염처리업: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(이하 "방염"이라 한다)하는 영업

2. ~ 5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9조(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) ① 시·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·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26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10조(과징금처분) ① 시·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제33조(권한의 위임·위탁 등)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

2.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

3.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

4.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

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·학력·경력의 인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,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삭제